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2024. 2. 13.

천안고용노동지청장

- 1. 건 명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: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- 3. 공고대상자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최O지	1988. 6. 2.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	청년 자기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(사유발생일: 최초 미납발생일)	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	폐문부재	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4. 2. 13.~2024.2.29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강효진(☎041-620-7476)으로 문의 바랍니다.
※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(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: 2024. 3. 14.)